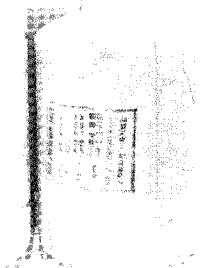


확대되는 제도

수산물 양식용 부자 EPR 대상 품목으로

환경부담금 대상 품목으로 2008년 7월부터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재활용이 추진되던 수산물 양식용 부자가 2011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으로 진입한다.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1. 양식용 부자의 적용 법률

기간	~ 2008. 6	~ 2010. 12. 31	2011. 1. ~	비고
적용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자발적 협약 대상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자총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8호

*수산물 양식용 부자만 해당. 방유(오퍽방지용)부자 등은 제외됨.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종전에는 제품 및 포장재의 생산 판매까지 책임을지고 사용후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전가시켰으나 EPR에서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매년 일정한 재활용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
- 업무 흐름도

업무	관계법	일자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법 제17조 제1항	전년도 12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법 제18조 1항	당해 년도 1월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법 제18조 1항	당해 년도 2월말
재활용의무이행	법 제 16조	당해년도
제품 · 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시행령 22조	다음 년도 4월 15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제출	법 제18조 2항	다음 년도 4월말
재활용 부과금 고지	법 제19조	다음 년도 6월말
재활용 부과금 납부	법 제19조	다음 년도 7월 20일

- 실시 시기

- ▶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2003년부터
- ▶ 수산물 양식용 부자: 2011년부터



3. 양식용 부자의 EPR 전환에 따른 일반사항 및 변경사항

3.1 일반 사항

- EPR 의무대상자 정의

구분	내용	대상자
제품(부자)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제조, 수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 재활용 실적 인정 대상

구분	제품(양식용 부자)	포장재
실적 대상	양식용 부자	농수축산물 상자, 가전포장재 등의 포장재
비대상	포장재, 단열재	부자, 단열재, 부품 포장재 등

- 미이행 부과금

구분	양식용 부자	포장재(EPS)
재활용 기준비용	627원/kg (수집운반비: 300원/kg)	317원/kg
부과금(미이행정도에 따라)	815원/kg까지	412원/kg까지

3.2 변경사항

- 이행 결과 보고

구분	지발적 협약	EPR
보고 기한	의년 2월 말	의년 4월말

-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혼입비율 조사

구분	지발적 협약	EPR
조사 주체	한국환경공단	해당 공제조합

- 재활용사업자 기준, 재활용 실적 인정 기준, 혼입비율 조사 기준, 서류 작성 및 보관 등은 동일

3.3 2011년도 의무율 : 27.7%

